

수 신 수신자 참조

(경유)

제 목 건축 관계법령 일부개정·시행 알림 [알림 2020-005]

1.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2020년 2월 시행되는 건축 관계법령의 개정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
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귀 회의 회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

- 아 래 -

법령명	공포일자	시행일자	주요내용
「건축사법」 (법률 제16486호)	2019.8.20	2020.2.21	• 건축사자격증이나 등록증의 명의대여 등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한 벌칙 상향 (제39조의2) (현행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(개정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「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」 (국토교통부령 제688호)	2020.2.12	2020.2.12	• 소규모건축물의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(별지 제3호 서식) - (개정) 보의 개구부폭, 배근, 온통기초 항목 추가 (별지 제3호서식 제4장) - (현행) 규정없음 (개정) 전통목구조인 건축물의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의 서식에 별지 신설(별지 제3호서식 제6장)

붙 임 : 개정문 2부. 끝.

대한건축사협회 회



담당자 김민지 팀장 임태영 국장 강주석 사무처장 이남식 부회장 김기석 회장 석정훈

협조자

시행 법제 230 - 331 (2020. 2. 26.) 접수

우 06643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 317 건축사회관 8층 / <http://www.kira.or.kr>

전화번호 02-3415-6837 / 팩스번호 02-3415-6868 / kira4@kira.or.kr / 비공개